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36

발의연월일: 2021. 2. 1.

발 의 자:김영주·김홍걸·안민석

이용선 • 고영인 • 박광온

유건영 • 도종환 • 박 정

유정주・설 훈・백혜련

송영길 · 이재정 · 김영호

이상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4년 남북이 《겨레말큰사전》을 종이사전과 전자사전으로 발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《겨레말큰사전》 편찬사업회와 남측 편찬위원회를 두고 사전 편찬을 위해 남북한 및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, 채집,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'전자겨레말큰사전'의 편찬,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의 통합 사업 등과 같이 사전 편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공동 편찬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 동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전 편찬과 교류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 이에 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, 《겨레말큰 사전》의 공동 편찬 작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유 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조 및 부칙).

법률 제 호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 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4호"를 "제8호"로 한다.

- 4.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 통합 사업과 이에 관련된 교류협력 사업
- 5. 각종 전문어의 통합 및 단일화 사업
- 6.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사업

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제2조 중 "15년"을 "2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편찬사업회는 다음	제6조(사업)
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 통
	합 사업과 이에 관련된 교류
	협력 사업
<u><신 설></u>	5. 각종 전문어의 통합 및 단일
	화 사업
<u><신 설></u>	6. 전자 겨레말큰사전의 편찬
	<u>사업</u>
<u>4.·5.</u> (생 략)	<u>7.·8.</u>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
	같음)
<u>6.</u> 제1호부터 <u>제4호</u> 까지에 부대	<u>9.</u> <u>제8호</u>
되는 사업	
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	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
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	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
률 부칙	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일	제2조(유효기간)
부터 <u>15년</u> 간 효력을 가진다.	<u>25년</u>